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8.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정이유

- 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외국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각급 기초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보건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조기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지역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외국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 외국인지원 시책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1조)
- 구미시 외국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13조)
- 외국인지원단체지원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내지 제15조)
- 매년 5월 20일을 “구미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함(안 제16조)
-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 대한 표창 및 명예시민으로 예우함을 규정(안 제17조 내지 제18조)

3. 참고사항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95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8442호, 2007.5.17) - 7.18 시행
- 행정자치부 :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2006. 10. 31)
- 경상북도 :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2006. 11. 24)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또는보조의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출입국관리법」 제3장, 제4장, 제5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제24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 제9조
-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지역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인권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의료 및 긴급구호 등)

4. 문화체험·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근로자 귀국정착프로그램 개발 운영

6. 외국인 가정 복지증진 사업

7.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지원업무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구미고용종합지원센터·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시·도의원, 외국인지원단체관계자, 외국인 등 외국인 복지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시책 추진 및 다문화공동체 환경조성

제13조(구미시외국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구미시 외국인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시책, 민원안내 및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수립 운영한다.

제14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구미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국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그 밖에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미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